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60
----------	-------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의결에 따라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및 외부위원 참여비율 등을 규정하여 안산시 연구 용역 추진 시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관련 법령 변경(안 제3조)
- 연구용역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관련 법령 신설(안 제7조)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관련 법령 신설(안 제17조)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규정 관련 법령 변경(안 제20조)

### 개정 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1. 20. ~ 2021. 2. 10.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용역발주 부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 제목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을 “(용역결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비공개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석 종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정심사팀장 이 재 규
	담당자 성명·전화	김 용 재 (행정 3028)

< 불임 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용역심의 대상)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7조(용역심의 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발주 부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대상 선정 시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

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삭 제〉

#### 제19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평가보고서 및 용역활용 현황과 현 실태를 점검하여 용역수행이 불량한 용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 의견이 있는 용역에 대하여는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용역 결과 공개)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물을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용역 결과 공개)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체를 비공개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